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9조의2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63조 제3항 제2호”를 “법 제68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범 범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폐 기 물 관 리 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 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0	50	1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 행규칙」 제9조의2제1호 내 지 제6호에서---(생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제16조 제 1호 부터 제6호까지--(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3.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① 시장은 음 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 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략)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 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및 문구 정리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음식물 폐기물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 다)제6조 제1항 제5호----- (생략)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음식물 폐기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 다)제7조제1항제5호----- (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1. 재활용하고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생략)	1. 재활용하고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 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법 제63 조 제3항 제2호의---(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 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법 제68 조제3항제3호의---(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의 설치)①(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	③ 시장은-----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② ~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 집·운반 및 재활용)①음식물 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 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 집·운반 및 재활용)①음식물 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 하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②-----법 제26조제1항의 ------(생략)	②-----법 제25조제1항의 ------(생략)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반영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폐기물관리법	1. ----- ----- ----- ---(법 제15조관련)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 ----- ----- ----(법 제15조관련)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 ----- (법 제16조 제2항 관련)	(생략)	(생략)	(생략)	『폐기물관리법』	가~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 ----- ----- (법 제16조 제2항 관련)	(생략)	(생략)	(생략)	3. ----- ----- -----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